



Mukilteo School District

학생 - 시리즈 3000

괴롭힘, 위협, 불링 금지 - 절차 - 3216

A. 정책 설명

Mukilteo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이 없는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 정의

“괴롭힘, 위협, 불링”은 전자적으로 전송된 것 등 *RCW 9A.36.080(3)*에 포함된 특정 특성(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성별, 성별 표현 또는 성적체감 등의 성적 성향, 또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이나 기타 부각되는 특성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 등의 의도적인 서면 메시지 또는 이미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해가 되고 학생의 자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또는
- 학생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는 영향이 있는 행위 또는
-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만연적이어서 교육 환경에 위협이 되는 행위 또는
- 질서 정연한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는 영향이 있는 행위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피해 학생이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에 기반이 되는 특성을 실제로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기타 부각되는 특성”이란 신체적 모습, 의류 또는 기타 의복, 사회경제적 상태, 몸무게를 포함할 수 있고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도적 행위”란 개인이 행동의 결과적 영향보다 행위 자체에 관여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 행동/표현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의 형태는 비방, 유언비어, 농담, 풍자, 비난하는 언사, 그림, 만화, 장난, 몸짓, 신체적 공격, 위협 또는 기타 서면, 언어적, 신체적 메시지나 이미지 또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게시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나 이미지와 같이 다양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교육 환경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종교, 철학 또는 정치관의 표현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지 않습니다. 괴롭힘, 위협, 혹은 불링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행위들이 기타 교육구 정책, 건물, 교실 혹은 프로그램 규정에 의해 금지됩니다.

D. 교육

이 정책은 안전하고 올바르게 존중하고 포용적인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구의 책임 요소이고, 가족과 커뮤니티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 교육 등 교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종합적 교육과 함께 이행됩니다.

E. 예방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괴롭힘, 위협, 불링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고, 가족, 법 집행 및 기타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기관의 도움을 모색합니다.

F. 중재

중재는 피해 학생과 위반의 영향을 받는 기타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시정하고 가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긍정적인 학교 풍토를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구는 사건의 빈도, 학생의 발달 연령,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중재 전략을 결정할 것입니다. 중재는 카운슬링부터, 행동 시정과 징계, 법 집행부에 회부까지 다양합니다.

G. 보복/허위 주장

보복은 금지되며 적절한 징계가 뒤따릅니다. 괴롭힘, 위협, 불링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것은 이 정책에 위반됩니다. 고의로 괴롭힘, 위협, 불링에 대한 허위 주장을 신고하는 것도 교육구 정책에 위반됩니다.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선의적인 신고로 인해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신고했거나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H. 준수 사무관

교육감은 기본 교육구 연락 담당자로서 준수 사무관을 지정하여 모든 공식 및 비공식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정책을 이행할 것입니다. 준수 사무관의 이름과 연락처는 교육구 전체에 걸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교육감은 이 정책의 요소들을 해결하는 절차의 이행을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차 참고문헌:

[위원회 정책 2314](#) 전자 자료

[위원회 정책 3200](#) 학생의 권리와 책임

[위원회 정책 3210](#) 비차별

[위원회 정책 3240](#) 학생 행동

법률 참고문헌:

[RCW 28A.300.285](#) 괴롭힘, 위협, 불링 방지

[RCW 28A.600.480](#)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 신고 - 보복 금지 -면책

[RCW 28A.640.020](#) 성희롱

[RCW 28A.642](#) 차별 금지

[RCW 49.60.010](#) 차별 금지법

도입일: 2011년 6월 13일